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절차 및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5조제2항 단서 신설).

II. 검토의견

1. 유치원의 폐쇄 인가 전 통지 의무(안 제8조제4항)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인가 신청 전에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 ‘학부모’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의규정의 ‘보호자’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¹⁾

1)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 ③ (생략)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 · 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다만,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부모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2.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 ----- ----- ----- --. 다만,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2. 유아 건강검진 의무 미이행에 대한 면제 근거 마련(안 제35조제2항)

안 제35조제2항에서는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3회 이상의 ‘건강검진 안내’가 필요한 것인지, 3회 이상의 ‘건강검진 안내와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가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건강검진 안내와 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 모두 3회 이상 요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35조(과태료) ① (생략)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 <u>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u>	② ----- ----- ----- ----- ----- ----- <u>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²⁾ 통보서 제출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전문위원 이 은 정)

2)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